문서확인번호: 1705488905984962
■ 자동차등록규칙 [별지 제1호서식] <개정 2025. 2. 17.>

(앞 쪽)

자동차등록증

제 202611-003169 호 최초등록일 : 2021 년 10 월 26 일

① 자동차등록번호	181수4837	② 차 종	대형 승용	③ 용도	자가용
④ 차 명	그랜저(GRANDEUR)	⑤ 형식 및 제작연월	IG1DBC-S9-G5A		2021-10
⑥ 차 대 번 호	KMHF341DBNA471897	⑦ 원동기형식	G4KN		
⑧ 사 용 본 거 지	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41길 10, 201호(용두동, 용두드림빌)				
소유자 ⑨ 성명(명칭)	강명수	⑩ 생년월일 (법인등록번호)	720213-*******		

「자동차관리법」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※ 유의사항 :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인 경우 ⑦번란의 '원동기형식' 은 '구동전동기형식' 을 말합니다.

이전(분실재교부)
전 자동차등록번호 : 152하5301

2026 년 11 월 05 일

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(동대문구청장인)

1. 제 원

⑪ 제원관리번호 (형식승인번호)	A08-1-00120-0115-1321		
⑫ 길이	4990 mm	⑬ 너비	1875 mm
⑭ 높이	1470 mm	⑮ 총중량	1950 kg
⑯ 승차정원	5 명	⑰ 최대적재량	0 kg
⑱ 배기량 또는 구동축전지 용량	2497 cc, (Ah), [Ah]		
⑲ 정격출력	198/6100 Ps/rpm, (kW/rpm), [kW/rpm]		
⑳ 기통수 (구동축전지정격전압) [연료전지 최고출력]	4 기통, (V), [kW]		
㉑ 연료의종류 및 에너지소비효율	휘발유(무연) 11.1 km/L,(km/kWh),[km/kg]		
㉒ 구동축전지 셀의 제조사		㉓ 구동축전지 셀의 형태	
㉔ 구동축전지 셀의 주요 원료			

유의사항 : ⑱~㉑에서 기재 단위는 전기자동차의 경우는 (), 수소전기자동차의 경우는 []을 말합니다.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1 제2호의 특수자동차의 경우 ⑰ 최대적재량은 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하기 위해 허용되는 최대수직하중을 말하며 견인능력과는 무관합니다. ㉒~㉔는 구동축전지를 갖춘 자동차(외부 전기공급원을 통해 충전할 수 없는 구조인 자동차는 제외한다)의 경우만 해당합니다.

2. 등록번호판 교부

㉕ 구분	㉖ 번호판 발급일	㉗ 발급대행자확인

3. 저당권등록사실(저당권등록의 내용은 자동차등록원부(을)를 열람 · 확인하시기 바랍니다)

㉘ 구분(설정 또는 말소)	㉙ 날짜

4. 검사 유효기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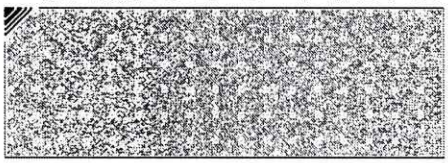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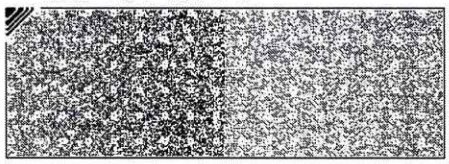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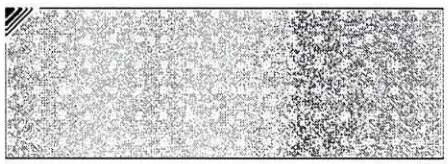
㉚ 연월 일부터	㉛ 연월 일까지	㉜ 검사 시행장소	㉝ 주행 거리	㉞ 검사 책임자 확인	㉟ 검사 구분
2025-10-26	2026-10-25		43,763		종합검사
2026-10-26	2027-10-25		49,232		종합검사

주의사항: ㉚항 첫째란에는 신규등록일을 적습니다.

비고

-자동차 출고(취득)가격(부가세 제외): 37,424,421 원

◆ 자동차365(car365.go.kr)의 인터넷발급문서확인 메뉴를 통해 위·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(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) 또한 문서 하단의 바코드로도 진위확인(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)을 하실수 있습니다.

문서확인번호: 1705488905984962
■ 자동차등록규칙 [별지 제1호서식] <개정 2025. 2. 17.>

(뒤 쪽)

자동차 소유자 유의사항

○ 사용본거지 · 성명 등의 변경등록(법인과 외국인에만 해당함. 「자동차등록령」 제22조제2항에 따라 개인은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정정신청, 변경신청, 정정신고 또는 전입신고를 한 경우, 변경등록의 신청을 한 것으로 봄)

- 전입신고일 또는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사용본거지의 시 · 군 · 구청 또는 자동차등록관청에 사용본거지 · 성명 등의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.(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른 과태료)

○ 자동차소유자는 정기검사 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. (유효기간 경과 시 관련 규정에 따른 과태료)

○ 튜닝승인

- 자동차의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튜닝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(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)

○ 이전등록

- 양수인은 이전사유별로 다음의 기간 내에 이전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. (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른 범칙금)
 ·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,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,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,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

- 양수인이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도 양수인을 대신하여 이전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
○ 말소등록

- 사유(폐차요청 등) 발생일부터 1개월(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) 이내에 관련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.(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른 과태료)

○ 무단방치 자동차의 강제 처리

- 자동차를 도로 등에 무단방치하는 경우에는 폐차 등 강제처리대상이 됩니다.(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)

자동차등록증

서울특별시

5. 변경등록사항

㊱ 성명	㊲ 등록날짜	㊳ 확인

6. 튜닝사항

㊴ 내용	㊵ 검사날짜	㊶ 검사책임자 확인

7. 기타

㊷ 내용	㊸ 날짜	㊹ 확인

◆ 자동차365(car365.go.kr)의 인터넷발급문서확인 메뉴를 통해 위·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(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) 또한 문서 하단의 바코드로도 진위확인(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)을 하실수 있습니다.

